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2월 27일 16시 28분



목차

목차	2
부동산중개업안내	3
주택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)	3
비고	3
오피스텔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)	3
주택 이외(토지, 상가 등)	4

개별공시지가열람	개별주택가격열람	도로명주소안내	부동산중개업안내
조상땅 찾기 안내	비법인단체 신청	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단속	부동산중개수수료
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	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	부동산특별조치법 안내	지적재조사사업

- [개재안및중개업소현황](#)
- [유의사항](#)
- [중개수수료](#)

주택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)

2021. 10. 19. 시행

구 분	거래금액	요 율	한도액	비 고
매 매 교 환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6	25만원	<거래금액 산정> ▪ 매매 : 거래금액 ▪ 교환 : 교환대상 중 거래 금액이 큰 중개 대상물의 가액 ▪ 임대차 등 > 월세가 없는 경우 : 보증금 > 월세가 있는 경우 ▪ 5천만원 이상 : (월세×100)+보증금 ▪ 5천만원 미만 : (월세× 70)+보증금
	5천만원 이상 ~2억원 미만	1천분의 5	80만원	
	2억원 이상 ~9억원 미만	1천분의 4	-	
	9억원 이상 ~12억원 미만	1천분의 5	-	
	12억원 이상 ~15억원 미만	1천분의 6	-	
	15억원 이상	1천분의 7	-	
임대차 등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5	20만원	
	5천만원 이상 ~1억원 미만	1천분의 4	30만원	
	1억원 이상 ~6억원 미만	1천분의 3	-	
	6억원 이상 ~12억원 미만	1천분의 4	-	
	12억원 이상 ~15억원 미만	1천분의 5	-	
	15억원 이상	1천분의 6	-	

비고

-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.
-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,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오피스텔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)

구분	상한요율	요건
매매·교환	1천분의 5	▪ 전용면적 85㎡이하일 것

(http://www.yeosu.go.kr)

주택 이외(토지, 상가 등)

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